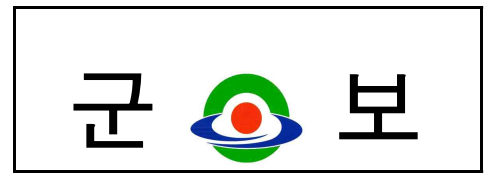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7호 2022. 11. 28.(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520호)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21호)
-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22호)
-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23호)
-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24호)

규 칙

-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1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20호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예천읍 충효로 393,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관리·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제6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항은 영 제4조를 따른다.

제7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예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4장 보칙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지방공무원법」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안 제3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지원 (안 제4조)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의거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음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구성 (안 제5조)

- 센터장 1명과 관리·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
-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라.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안 제6조)

-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21호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 제2조)

○ 현행: 2022년 6월 30일

○ 개정: 2025년 6월 30일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22호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결손처분자”를 “정리보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결손처분)액”을 “(정리보류)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

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 제3항 및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손처분의 용어변경으로 관련 조문 변경 (안 제4조)

- 기존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변경

나.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변경 (안 제8조, 제16조)

-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변경
-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변경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23호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을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손처분의 용어변경으로 관련 조문 변경 (안 제2조)

○ 기존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변경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24호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민의 환경
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클린예천 실천운동을 차
질 없이 추진하고 클린예천을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린예천”이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예천군의 이미지를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예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영농환경심사”란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등 평가지역과 평가대상에 대한 관리 상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지역”이란 평가 대상자가 농·축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영농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나. 축사 또는 작업장과 그 주변지역

다.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4. “평가대상”이란 평가지역과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적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가. 각종 농업, 축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나. 폐비닐, 보온덮개, 차양막 등 농사용 자재

다. 축사, 작업장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자재

라. 그 밖에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5. “평가기준”이란 제3호의 평가지역에 대하여 제4호의 평가대상 관리 상태를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클린예천 만들기는 군 전역의 마을 어귀, 도로변, 임도, 경작지 주변(배수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며, 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민은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농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실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실행계획 및 실천운동

제5조(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클린예천 조성을 위한 청결활동 전개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의 평가지역에 같은 조 제4호의 평가대상을 무단투기, 적치, 소각하지 않도록 홍보·계도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관하여 군민 교육 및 농·축산업인 지도, 분리배출 등 홍보를 실시한다.

제6조(실천운동 전개) ① 군수는 실행계획에 따라 클린예천 만들기 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이라 한다)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클린예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청결활동 참여 및 홍보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실천
3.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폐기물, 물품 등 무단투기·적치·소각 금지
4. 거주지, 공장, 근무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

제7조(실천운동 전개 지원) 군수는 군민들이 제6조에 따른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리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경작지 주변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처리 수수료를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영농환경평가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클린예천 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읍·면별 영농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읍·면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촉직 :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은 읍·면 주민

2. 당연직 : 읍·면 팀장, 업무 담당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인 위원 중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읍·면 지역 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사한다.

1.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환경심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지도자 추천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각종 영농, 축산 등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사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인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협의체 지원

제16조(협의체 구성) 군수는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를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제17조(행·재정적 지원) 제16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의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행정조치) 군수는 제6조제2항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군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범군민 클린예천 실천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클린예천을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영농환경심사제”란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등 평가지역에 대한 관리 상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함.
- “평가지역”이란 평가 대상자가 농·축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을 말함.
- “평가대상”이란 평가지역과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적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함.

나. 적용 범위(안 제3조)

- 예천군 전역의 마을 어귀, 도로변, 임도, 경작지 주변 및 해당 지역 주민

다. 군민 참여 및 지원(안 제7조)

- 클린예천 실천운동에 참여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물품,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처리수수료 감면(안 제8조)

- 읍·면장의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매립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음.

마. 영농환경평가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9조 ~ 제15조)

- 구성인원 : 읍·면별로 10명 이내(당연직 및 위촉직)
- 기능 : 영농환경심사,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 환경지도자 추천 등
- ※ 영농, 축산 등 군 보조금 지원 시 영농환경심사 결과 반영 가능
- 위원임기 : 위촉직 2년, 당연직(공무원) 재임기간
- 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실비지급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여비, 수당 등 지급 가능(공무원 제외)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2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12호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 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채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영 제74조의2 제5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징수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 · 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군) 읍·면(동) 길(로)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 재	(인)
				환급금 정 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징수(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 · 신고납부 · 감액 · 정정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신고납부·감액·정정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군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 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출생연월일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부과금액	감액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80g/㎡)

정 리 보 류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 장	부군수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조사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확인자 (과 장) :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병)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정 리 보 류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 은닉 여부 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을)]

정리보류표

[illegible]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 (병)]

시 효 완 성 정 리 표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80g/㎡)

예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채납처분비				
합계				

끝.

예 천 군 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예천군 군세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손처분의 용어변경으로 관련 조문 변경 (안 제13조 ~ 제16조)

- 기존의 결손처분은 정리보류로 하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의 결손처분은 시효완성정리로 변경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20조)

- 영 제74조의2제5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으로 변경